

성적관리에 관한 내규

KAU 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6.10.28		16		
2	2017.6.19		17		
3	2018.3.1		18		
4	2021.1.18		19		
5	2023.12.18		20		
6	2024.4.29		21		
7	2024.7.29		22		
8	2026.2.9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성적관리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본 지침은 한국항공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업성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본 지침은 학칙시행세칙 제13조에 의한 정기시험 및 수시시험, 계절학기 시험의 결과로 얻어지는 학기말 학업성적에 대해 적용한다.

제2조의2 (학부(과)의 적용) 이 규정상의 학부(과)는 학칙 제2조에 명시된 교육조직을 의미한다.
<본조 신설 2026.2.9>

제3조 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는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의거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시험(수시, 기말)과 평소성적(출석, 과제 등)을 근거로 한다.

② 한 학기 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1/4이상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③ 삭제 <2018.3.1>

④ 조종실기 교육의 평가는 비행교육원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학점인정은 항공운항학과장이 확인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⑤ 동점자의 성적은 다음 각 호 순으로 처리한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.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합산 성적 | 2. 기말고사 |
| 3. 중간고사 | 4. 과제 |
| 5. 출석 | 6. 기타 |

제4조 (성적평가방법) ① 성적평가는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의거 전 과목에 대하여 상대평가 유형 I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상대평가 유형 II 적용을 할 수 있으며,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의 각 호의 1과 같다.

<개정 2018.3.1., 2021.1.18.>

1. 상대평가 유형 I : A⁺, A⁰(30% 이내), A⁺, A⁰, B⁺, B⁰(70% 이내)

2. 상대평가 유형 II : A⁺, A⁰(40% 이내)

※상대평가 등급인원은 소수점이하 올림

② 학군단 군사교육과목, 조종실기과목, 관제교육 실습과목, 우수반 강좌, 영어강의강좌(영어학과 전공강좌 및 영어 어학 관련 강좌는 제외)등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1., 개정 2021.1.18.>

③ 기타 과목의 특성으로 총장이 승인한 과목은 상대평가 유형 II 적용 또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1>

④ 합격(Pass), 불합격(No Pass)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[종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 <2018.3.1>]

1. 사회봉사
2. 취업강좌
3. 기타 P/NP평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업

⑤ 대학원과정생, 국내외 교환학생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종전 제3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 <2018.3.1>]

제5조 (성적평가의 단위) ① 성적평가는 강좌별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
<개정 2018.3.1>

②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공동 시험 출제하거나 조별단위 순회 수강하는 경우 등은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6.19>

제6조 (성적의 등급) ① 평점표의 성적표기는 학칙 제31조에 의거 등급(A+, A°, B+, B°, C+, C°, D+, D°, F)으로 한다.

등 급	실 점	평 점
A+	95~100	4.5
A°	90~94	4.0
B+	85~89	3.5
B°	80~84	3.0
C+	75~79	2.5
C°	70~74	2.0
D+	65~69	1.5
D°	60~64	1.0
F	0~59	0.0

② 제 1항 등급이외에 다음과 같은 평가기호를 사용한다.

1. P(Pass), NP(No Pass) : 합격(Pass), 불합격(No Pass)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평가기호
2. R(Retake) : 과목재수로 학점을 재취득하는 경우 기존성적을 대체하는 평가기호로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
제7조 (성적산출) ① 성적의 산출(평점평균)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 단, 합격(Pass) 또는 불합격 (No Pass), 과목재수(Retake)로 지정된 과목은 평점평균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.

2014학년도 2학기 이후 성적 :

$$= \frac{\sum(\text{과목별 학점수} \times \text{과목별 성적평점})}{\text{총 수강신청 학점 수(P, NP, R학점 제외)}}$$

2014학년도 1학기 이전 성적 :

$$= \frac{\sum(\text{과목별 학점수} \times \text{과목별 성적평점})}{\text{총 취득학점 수(P 학점 제외)}}$$

② 100점 만점 환산점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,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 단, 평점 평균이 0일 경우 백분율 산출을 하지 않는다. <개정 2024.4.29., 2024.7.29.>

$$\text{백분율 산출공식} = 55 + \{(\text{평균평점}) \times 10\}$$

※ 학업성적표에는 학기별 평점평균 및 총 평점평균에 대한 100점만점 환산점수를 표기한 다.

제8조 (성적대체) ① 매학기 수업종료일기준 4주 내에 질병(입원가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사소견

서를 제출한 자) 또는 군입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학기 중에 평가한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3.1>

② 전 항의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기말시험 대체원을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을 경유,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의 2 (파견 해외교환학생의 성적인정) ① 해외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소속 학부(과)장의 심사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제2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2전공 학부(과)의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10.28., 2021.1.18.>

② 파견 교환학생의 성적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<개정 2016.10.28.,2021.1.18.>

1. 전공(전필, 전선편과목은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등급을 그대로 인정한다. 단, 본교와 성적체계가 상이한 교환대학의 성적은 해당 학부(과)장의 심사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2. 일반(교필, 교선, 일선)과목은 합격(Pass), 불합격(No Pass)으로 인정한다.

③ 파견 교환학생의 이수과목은 교환대학의 교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한다.

단, 대체인정 시에는 본교 대체교과목명을 병행 표기한다. <개정 2016.10.28. 2021.1.18.>

④ 파견 교환학생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신설 2016.10.28>

1. 과목별 학점은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. 단, 본교와 학점체계가 상이한 교환대학의 학점은 해당 학부(과)장의 심사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1.1.18.>

2.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한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단, 계절 학기는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3.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대체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본교 대체교과목에 부여된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8.3.1>

4. 복수의 교과목을 합쳐서 본교 하나의 교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1>

5. 삭제 <2023.12.18.>

제8조의 3 (국내 학점교류생의 성적인정) ①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, 학점교류생으로 선발된 본교 학생이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학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학점교류생의 성적인정은 교환대학의 100점 만점 환산점수를 본교 등급으로 적용하며, 모든 과목의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.

③ 본교 수강신청 학점에는 교환대학의 수강신청학점이 포함되며, 제한된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<본조 신설 2021.1.18.>

제9조 (성적공시)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중간시험 및 학기말시험 후 평가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, 학기말 성적은 학기종료 후 성적입력기간인 7일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.18.>

② 성적공시(성적입력, 이의신청기간 포함)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.

③ 학생의 학기말 성적은 학칙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하여 보호자 및 학생이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.

[전문개정 2018.2.27]

제9조의 2 (성적경고 등) ① 매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 1.80미만인 학생 및 보호자, 소속 학부(과)장에게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에 성적경고를 통보한다.

② 성적경고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학부(과)장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학기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하는 학기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연속 2회 또는 누적 3회 이상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에 학생생활·성평등 상담소, 교수학습센터 등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.

<본조 신설 2018.3.1>

제10조 (성적 이의신청)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, 성적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
<개정 2018.3.1>

②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을 접수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성적 이의신청 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으며, 정정사유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8.3.1>

제11조 (성적제출 등)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과목별 성적을 소정의 기일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성적확인서 및 출석부를 소속 학부(과)에 제출하며, 학부(과)에서는 점검 후 점검결과를 교무팀으로 제출해야 한다.

② 외래강사 담당과목의 성적에 대한 공시 및 제출은 소속 학부(과)장이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출석부 사본, 과제보고서, 실험실습보고서, 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석부 원본 및 시간강사의 성적평가 자료는 학부(과)장의 책임 하에 학부(과)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.18.>

④ 전자출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석부 제출 및 점검, 제3항에 따른 출석부 보관 등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1.>

⑤ 학생이 부모가 강의하는 과목을 불가피하게 수강하는 경우,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최종 성적부여 시 출석, 과제,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교수의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 성적 공정성 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.

<신설 2021.1.18.>

제12조 (성적의 정정)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단,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정정은 담당교수가 소정의 정정원에 사유를 기재하고 성적정정에 대한 근거서류(답안지 등)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<개정 2018.3.1>

제13조 (기타) ① (계절 수업 성적처리)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, 환산총점 및 평점평균에 포함한다.

② (재수강) 과목재수로 취득하는 성적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평점평균을 계산하며, 이전학기에 취득한 해당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칙 제 31조에 의거 R(Retake)로 대체한다. 단, 기 취득 성적에 대한 성적경고기록은 말소되지 아니한다. 과목 재수로 재수강하는 과목에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재수강한 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 성적은 B⁺를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(휴학자의 성적처리) 수업일수 11주 이내에 휴학한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8.3.1>

④ (자퇴자의 성적처리) 학기 중 자퇴한 학생의 경우에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

취소한 것으로 본다. 단, 학기말 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퇴하는 경우에는 당해학기 성적으로 처리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본 내규는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(폐지되는 지침)본 내규의 시행에 따라 [성적관리지침]은 폐지한다.
2.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경과조치) 개정 내규 제8조의 2에 의한 파견해외교환학생의 성적인정은 2016학년도 2학기 파견해외 교환학생부터 적용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6월19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4.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성적경고자 관리에 따른 경과조치) 제9조의 2제3항은 2017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자 부터 적용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제7조 제1항의 개정사항(백분율 환산점수 산출공식)을 적용받는 대상은 현 성적평가 방식(4.5만점 등급제)으로 성적 부여된 졸업생을 포함한다. 동 규정 개정 전의 백분율 환산점수 산출 방식으로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산출공식을 적용한다.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